

수업 중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의 근절을 위해 수업 모니터링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

어차피 시집이나 갈 여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다.

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수업 중 교수들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π@

‘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어야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다니는건 아닌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비하되고 차별받는 것. 그 자리에서 애써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교수 얼굴을 대면해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불쾌함을 지울 수 없었던 ..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 이란 명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보통 여학생입니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신나게 웃고 있기도 하죠. 이는 분명 여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그리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의 관계 속에서 놓여진 학생들은 교수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불편함을 표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교수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했을 시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망친다’는 야유를 들어야 하며, 민감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일상 속에 숨겨진, 은연중에 감춰져 있는 성폭력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교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 모니터링을 제안합니다.

모니터링 팀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듣고 있는 수업 중 과목을 정하여 매 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이 있을 시, 모니터 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비공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모니터 내용은 익명 처리되구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것 이외에도, 모니터링 후 취할 공동 대응 방침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할 예정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한 학기 모니터링 완료 후 해당 교수에게 레드카드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음 해요.) 온-오프라인 모임이 여학우들의 불편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합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성차별적 발언 모니터링’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키워간다면,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여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을꺼예요. 모두들 함께해요. ^.^

신청은 총여학생회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 happyfem@yonsei.ac.kr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연세대학교 16대 총여학생회

성폭력 교수가 징계 처리되는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대학 총장이나 대학은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징계의결요구권과 징계처분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징계 결정은 대학을 넘어서서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학교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에서 구성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교원인사위원회나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와 징계 요구 및 발의 권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징계나 경징계나 하는 징계 수위는 교원인사위원회나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징계를 요청·발의하게 됩니다.

국립대(나라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대학)

-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할 교육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로 나뉜다. 이 중 교수는 특별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
-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다(제3조 제1항) 특별징계위원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된다(제4조 제1항) 특별징계위원회의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실장·국장 또는 감사관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제4조 제3항)
- 대학에서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제6조 제1항)
- 대학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해서 해야한다(제6조 제2항)
- 특별징계위원회가 대학 총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의결을 해야 한다(제7조 1항)
-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 제1항)
- 특별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인 대학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제16조)
- 징계처분자인 대학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한다(제17조 제1항)
-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학 총장은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¹⁾(제20조의2)

공립대학(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대학)

- 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

1) 국·공립대의 경우 징계 재심사가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 교원대가

라 징계가 이루어진다.

- 공립대학 교수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²⁾에서 징계를 담당한다(제21조 제3항)
-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제22조 제1항)
-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제23조 제1항)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제23조 제3항)
-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 제1항)
-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인 공립대학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제16조)
- 징계처분자인 공립대학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제17조 제1항)
-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립대학 총장은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³⁾(제20조의2)

사립대학(사립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

-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사립대학 총장은 교수 징계에 있어서 '징계의결요구권자'이며 '징계처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총장에게는 교수를 징계할 권한은 없고, 단지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만 있다. 그리고 재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징계를 행하는 일을 담당한다(제61조 제1항, 제64조)
- 사립대학에서는 교수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재단)에 둔다(제62조 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수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임명한다⁴⁾(제62조 제2항)
- 대학에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나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 총장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재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거나 요청한다(제64조)
- 교원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하면 징계 결과와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서 대학 총장에게 통고한다(제66조 제1항)
- 대학 총장은 징계 결과를 통고받으면 7일 이내에 징계의결에 따라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제66조 제2항)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수 없다⁵⁾(제66조의2)

2) 이번에 시립대 교수 징계를 결정한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이며, 위원은 시공무원 3명(위원장인 부시장 포함)과 교수(서울시 산하 공립대학 교수들) 4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성비는 남성 6명, 여성 1명이다.

3) 9월 17일 정직 1개월 징계결정 이후, 10월 4일 시립대 총장이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재심사 결과로서 10월 15일 해임결정이 내려졌다.

4)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재단에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단 이사 3인, 학교 관계자(실처장급 이상 보직 교수로 추정됨) 2인으로 이루어졌다.

5) 연세대학교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0년 5월에 발생해서, 2003년 여름에서야 교무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총장이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2년의 징계공소시효를 넘기고 40개월이 지나서야 재

※ 대학 성폭력상담실로 신고 접수된 교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사건신고	사건조사	징계 요구	징계의결	징계처분
과정	성폭력상담실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학 총장	징계위원회	대학 총장
내용	반성폭력 학칙에 따라 성폭력상담실이 설치 운영된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요청할지를 논의한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요청발의내용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징계위원회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학교법인(재단) 징계위원회	

*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없는 대학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담당한다.

※ 각 대학별 구성

	사건신고	사건조사	징계 요구	징계의결	징계처분
연세대	성폭력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을 신고 접수 받는다.	교수 7, 학생 3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한다.	총장이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재단 인사 3인, 학교 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총장이 서울시에 교수 징계를 요청한다.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무원 4인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다.	
서울대					

교원징계재심의

- 가해 교수는 징계위원회⁶⁾의 징계의결과 대학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징계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재심의를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의위

단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논의를 하였다.

6) 국립개학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공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징계위원회',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에 구성된 '재단 교원징계위원회'